

제 정 : 2018.03.22

일부개정 : 2020.03.12

일부개정 : 2020.05.11

일부개정 : 2021.01.04

일부개정 : 2022.03.25

# ESG 위원회 규정

2022.03.25



# ESG 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41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8 조에 의한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 및 기능)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 8 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해 심의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ESG 관련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, ESG 경영을 위한 주요 실행 계획을 심의하며, 당사 및 자회사의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 및 주주가치,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간사에게 내부거래 및 주주가치,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 4 조 (의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간사로부터 매 분기 1 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, 회사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하며,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회 의

#### 제 6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개최일 3 일 전까지 문서,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 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 8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
  2. 전 호에 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의 거래금액 기준 미만이더라도 위원회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상정한 내부거래

- 지주회사 주요 거래 (브랜드수수료,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, 부동산 임대차 등)

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주주가치 및 주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정관의 변경 (본 위원회 관련 사항)
-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
-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이익배당, 주식배당의 결정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-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-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

3.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

③ 위원회는 ESG경영을 위한 전략 방향과 이행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회사의 보고를 받으며 필요 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ESG 관련 정책의 수립, 관리에 관한 사항

2. ESG 활동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

3. ESG 관련 주요 실행 계획 심의

4.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이행관리 및 개선

- ESG 관련 사업 및 투자 활동, 기타 ESG 관련 활동

5. ESG 관련 공시 및 대외평가 결과 보고

6. ESG 관련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 조 (간사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